

업무지침

2023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

2023. 2.



목 차

※ 주요 개정 사항	1
------------------	---

I. 면허신고

1. 개 요	5
2. 의료인 면허신고	6
3.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	10
5. 면허신고 업무 관련 행정사항	11

II. 보수교육

1. 개 요	15
2. 의료인 보수교육	17
3.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	28
4.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	30
5.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	30

III. 참고서식	37
-----------------	----

'23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

페이지	변경 전	변경 후
【의료인 보수교육】		
23p	<p>(1)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('18.1.1 시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	<p>(1)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('18.1.1 시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염관리, 의료윤리, 의료법령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
24p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10px;"> <p>【협조사항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염관리,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, 의약품 부작용사례,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■ <추가> ■ 성희롱·성폭력·폭력 및 인권교육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, 감염관리, 장애인 건강권,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(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), 자살예방(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), 아동학대예방, 노인학대예방,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교육과정 마련 ■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,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“별도 표시”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,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■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(「소중한 내 면허, 잘 관리하자」, 보건복지부) 활용하는 방안 권장 ■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표준교안('21.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배포)을 활용하는 방안 권장 </div>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10px;"> <p>【협조사항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염관리,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, 의약품 부작용사례,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■ 감염관리의 경우, <u>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·의료기관평가인증원('22.10월) 「알기 쉬운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」(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 진료 중심) 활용하는 방안 권장</u> ■ 성희롱·성폭력·폭력 및 인권교육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, 감염관리, 장애인 건강권,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(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), 자살예방(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), 아동학대예방, 노인학대예방, 안전진료 가이드라인, 환자혈액관리 등 교육과정 마련 ■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,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“별도 표시”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,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■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(「소중한 내 면허, 잘 관리하자」, 보건복지부) 활용하는 방안 권장 ■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표준교안('21.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배포)을 활용하는 방안 권장 </div>

제 I 부

면허신고



· I 면허신고

1. 개요

가. 추진 배경

-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

나. 추진 경과

- 면허신고제 도입 및 시행
 - 의료인 실태 파악 및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(이애주 의원 대표발의, '09.7.30)
 - 「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('09.11월~)」 구성·운영
 - 「의료법」 개정('11.4.28 공포, '12.4.29 시행) 및 의료인 면허 신고 시행('12.4월~)

다. 법적 근거

(1) 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

의료법

제25조(신고)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
라. 면허신고 수리 업무 수행

(1) 의료인 면허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: 각 협회 중앙회*

*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 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

의료법

제25조(신고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의료법 시행령

제11조(신고)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간호사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2. 의료인 면허신고

가. 면허신고 대상 : 모든 의료인

○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

* 해당 연도에 면허정지되어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, 보수교육 유예 판정

○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,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

의료법
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 <단서 생략>

나. 신고주기 및 기간 : 면허 취득,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*

*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완료 필요

☑ (의료인) 면허취득 연도별 면허신고기간

(1) 면허신고 시행('12.4.28) 이전 면허 취득자 : 일괄신고 실시

- 최초 일괄신고 : '12. 4. 29부터 '13. 4. 28까지
-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
 - 최초 일괄신고 기간 중 2012년도('12.4.29~'12.12.31)에 신고한 경우, 3년이 되는 해인 2015년에('15.1.1~'15.12.31) 재신고 필요
 - 최초 일괄신고 기간 중 2013년도('13.1.1~'13.4.28)에 신고한 경우, 3년이 되는 해인 2016년에('16.1.1~'16.12.31) 재신고 필요
- '12.4.28 이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, '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, 실태 등 신고
 - ※ (예) '10년도 면허 취득자가 최초 일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'18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,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취업상황 등 신고 필요

(2) '12.4.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: 면허를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
그룹명	면허 발급 연도	최초 신고 연도	차기 신고 연도
3A	2012.4.29~2012.12.31	2015	2018
3B	2013.1. 1~2013.12.31	2016	2019
3C	2014.1. 1~2014.12.31	2017	2020
4C	2015.1. 1~2015.12.31	2018	2021
산식	X	(X+3)	(X+6)

※ (예) 면허를 '20.3.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'23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

(3)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

- 의료인이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되어 신고하지 않았다면,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
 -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(면허증의 재교부 연도)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- ※ (예) '14.3.20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2017년 면허신고 이전에 2017.4.23에 면허 취소되어 2023.3.20에 재교부 받았다면, 취소기간인 2017, 2018, 2019, 2020, 2021, 2022년은 면허신고 대상자에서 제외, 2015, 2016년까지 취업상황, 실태 등을 신고한 후 해당 업무 복귀, 면허 재교부 받은 해(2023년)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2026년에 면허신고

※ 절차: 면허취소 → 면허재교부 → 면허신고 → 업무 복귀

*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(lic.mohw.go.kr)

(4)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

-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
 -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
 - ※ (예1) '21.1월-'22.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, '22.9월-'23.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→ '21년-'22년 보수교육 이수, '23년도 보수교육 유예 판정, 면허신고는 정상적으로 시행
 - ※ (예2) '20.1월-'22.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, '22.9월-'23.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→ '20-'22년도 보수교육 이수, 면허신고는 정상적으로 시행
 - ※ 해당 연도에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, 보수교육 유예 판정

다. 신고내용 : 실태 등 신고서

- 기본 인적사항, 취업상황, 근무기관 및 지역,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)

라. 신고방법 및 절차

- (1) 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홈페이지의 「면허신고시스템」에 직접 접속* 하여 “실태 등 신고서” 작성 → 중앙회장(협회의 장)에게 제출 (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)

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

【첨부서류】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(별지서식)

- (2) 중앙회장(협회의 장)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‘수리’ 또는 ‘반려’ 결정 통지 (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)

【신고요건】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

- 다만,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(협회의 장)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·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

*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보수교육 (면제,유예) 신청서

→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지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·유예 여부 확인 가능

- 의료인 각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·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·유예 확인서를 면허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
 - 단,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
- ※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, 우편 송달 비용은 각 협회가 부담

3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

가. 미신고시 행정처분 : 면허의 “효력정지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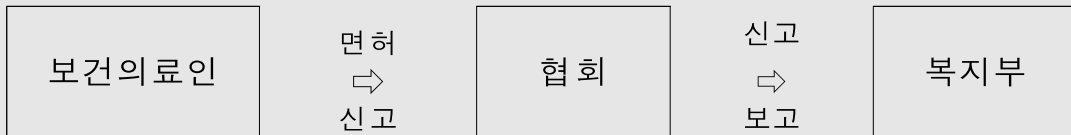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, 의료기사등, 간호조무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(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)

【행정처분 절차】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, 의견 제출 기회 부여 →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→ 도달시점(또는 처분일)부터 면허 효력정지

나.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: 신고 “즉시”

-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, 신고 “즉시” 면허 효력 회복(신고일자 기준 소급)

✓ 면허 효력 회복 절차



- ① (복지부)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/ 중앙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
- ② (협회)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보건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(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)

* 각 협회(중앙회)에서 민원인에게 효력회복 통보

4 면허신고업무 관련 행정사항

가. 면허신고 결과 보고(각 중앙회)

- 면허신고업무 수탁기관은 신고내용과 결과를 반기별(의료인)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 (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)
 - (의료인 중앙회장) 기본 인적사항, 취업상황, 근무기관 및 지역,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“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(별지 제10호서식)” 내용을 엑셀자료로 저장(반드시 비밀번호 설정)하여 제출

나. 인터넷 기반의 「면허신고시스템」 구축·운영 (의료인협회)

-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일체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과정 없이 **본인 확인*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** (필요시 중앙회 시스템 상 면허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)
 - * 공인인증서,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시스템 활용 등
- 중앙회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·유예 여부를 신고 의무자가 **항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**
- 면허 신고 시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는 면제·유예 여부, 보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**자동으로 확인***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설계
 - *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,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시스템 구축
-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, 작성한 신고 내용에 대한 **중간 저장(신고의 의미가 아님)은 가능하도록 함**
- 신고 수리 시에는 의료인이 신고 수리 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고 수리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, 통보

- 신고를 마칠 때, 해당 의료인의 다음 신고 시점을 안내
-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, 지회 또는 분회의 신고 대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

다.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 절대 금지

- 면허신고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,
 - 신고요건(보수교육 이수 등)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

제Ⅱ부

보수교육



·Ⅱ 보수교육

1 개 요

가. 추진 목적

-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·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

나. 추진 경과

- '81. 12. 31 :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
- '94. 1. 7 :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
(의료법 개정·시행 '94.07.08)
- '97. 8. 4 : 과태료 부과기준(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·시행)
 -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: 70만원
 - 조산사·간호사 : 50만원
- '00. 6. 30 :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
 - 의료인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
 - 1차 위반 시 : 경고
 -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: 자격정지 7일
- 2000. 10. 21 : 의료법시행규칙 개정
 -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: 10시간 → 8시간
- 2011. 04. 28 :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('12.4.29시행)
 -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력,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

다. 법적 근거

-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

의료법

제30조(협조 의무)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의료법 시행규칙

제20조(보수교육)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라. 보수교육 업무 주관

- 의료인의 보수교육 주관기관 : 각 협회 중앙회*

*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

의료법

제30조(협조 의무)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, 의료인 보수교육

가. 보수교육 대상 : 모든 의료인

-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(의료법 제30조제3항)
 - 다만,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(면제) 및 제7항(유예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
- 해당 연도에 면허정지되어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, 보수교육 유예 판정
- 면허 취소된 자는 면허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,
 -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으면,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

나. 보수교육 면제·유예제도

(1) 관련 근거 법령 :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및 제7항

의료법 시행규칙

제20조(보수교육)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한다.

1. 전공의
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 의과대학·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
3.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
4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
2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2) 보수교육 면제 대상

-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(전공의,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)
 -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,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,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
-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(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)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
 - (해당 예)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(원) 교육을 받은 경우,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, 군대에 사병(사회대체 복무도 포함)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

✓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 기준

- '11년도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전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의료법 시행규칙(2011년도 기준)

제20조(보수교육)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**보수교육을 면제**한다.

1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외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2. 군복무 중인 자
3. 전공의
4. 대학원 재학생
5. 행정기관 및 국·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6. 해외 체류,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
7.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8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

✓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

-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·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,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
- 치과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'23년도에 치의학대학원이 아닌 의과대

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,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

- 논문지도학기 과정*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(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)이 되는 경우,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
* 석사과정은 1년,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

-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,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

(예1) '23.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

(예2) 군대에서 일반사병(사회대체복무도 포함)으로 '21.11월 입대 후 '23.8월 제대한 경우, '21년 보수교육 이수, '22년 보수교육 면제, '23년 보수교육 면제

-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,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
(예: 1·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,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 이라면 보수교육 면제)

-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

(예) '23.3.17~'23.9.16 : 6개월 미만

'23.2.2~'23.8.2 : 6개월 이상

'23.4.2~'23.10.3 : 6개월 이상

※ 비전속근무자(주 3일 근무 등)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('23.1.1(최초근무일) ~'23.6.28(최종근무일)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)

- 해당연도 출산자(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)는 해당연도만 면제

※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

※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

(단,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)

(예1) '23.5.1일 출산 후 '23.7.29일 복직한 경우는 '23년도 보수교육 면제

(예2) '22.11.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('22.12.21~'23.12.20), '23.12.21에 복직 한 경우, '22년도 면제, '23년도 유예

(예3) '23.2.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, '23년도 보수교육 면제

(예4) '23.12.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('24.3.1~'26.2.28), '26.3.1에 복직을 한 경우, '23년도 면제, '24년 유예, '25년 유예, '26년 16시간

(3) 보수교육 유예 대상

-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*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 → (해당 예) 휴직자, 퇴직자, 교수 및 연구원, 일반·행정기관 종사자, 해외체류자 등
 * 각 의료인 별 면허범위 내 업무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

(4)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인정 절차

-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,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(별지 제10호의2 서식)” 작성 → 중앙회장에게 제출 (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)

【첨부서류】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* 증명서류 예시

면제 (제6항)	전공의(1호)	⇒ 재직증명서(인턴 1년, 레지던트 4년)
	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(2호)	⇒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	신규 면허 취득자(3호)	⇒ 면허증 사본
	복지부 장관 인정자(4호)	⇒ 출생증명서, 분만확인서,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⇒ 병적증명서,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
유예 (제7항)	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(1호) ● 휴직/ 폐업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 ● 병원 : 입퇴원 확인서 ● 해외체류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	

-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·유예 신청을 해야 함

- **중앙회장은**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,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(별지 제10호의2 서식)” 교부* (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)

*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·유예여부는 「면허신고시스템」에서 확인 가능

- (처리기간) **5일**

- 보건복지부장관이 “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” 또는 “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·유예 대상자 분류

*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의료인에게도 면제·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면제·유예 인정 집행

다. 보수교육 시간

(1) **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: 8시간 이상** (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)

-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(8시간 미만) 이수한 경우,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

* (예) '19년에 8시간, '20년에 8시간, '21년 4시간, '22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'23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: 16시간 이상(= '21년, '22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+ '23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)

-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하는 허용되나,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

(2)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

-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(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)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 (‘17.1.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)
 -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: **12시간 이상**
 -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: **16시간 이상**
 -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: **20시간 이상**
- *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

【사례】

- '19년~'21년까지 해외 체류 후, '22.1월에 귀국하여 '22.5월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'23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총 2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(‘19년~'21년 유예, '22년 20시간)
- '19년~'20년에 유예, '21년에 면제(예: '21.1월~12월까지 전공의 신분), '22년 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의료인이 '23년 면허신고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: 16시간
- '19년 면허신고 완료, '20.1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중 '21.1월부터 '22.12월까지 면허취소, '23.2월 업무복귀하려는 경우
 - ☞ '23.1월 면허 재교부 후 '23년 면허신고를 하고 업무 복귀를 하여야 하며, '23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'19년 8시간, '20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- '21년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허 신고 이전에 '21.3월부터 '22.12월까지 면허취소, '23.1월에 업무복귀하려는 경우
 - ☞ 면허 재교부 후 업무 복귀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, '23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'18년~'20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
 - ☞ 2023년 면허신고 이후 2026년에 면허신고를 다시 해야 함

(3)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

-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, 각 중앙회가 교육 내용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음
- 평가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,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
 - *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,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(인정시간 1시간 기준이 실제 교육시간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)하며,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
 - ** 보수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의료인의 경우, 해당 강의 시간을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가능

라. 보수교육 내용

(1)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('18.1.1 시행)

-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**의료법 시행규칙 개정**
 - * '16.9월 입법예고, '17.3월 공포('18.1.1시행)
- **감염관리,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**
 - ※ 단,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
-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'18년 신고시에는 필수 과목 이수가 필요 없으나, '19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

【협조사항】

- 감염관리,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, 의약품 부작용사례,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
- 감염관리의 경우,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·의료기관평가인증원 (‘22.10월) 「알기 쉬운 감염예방·관리 매뉴얼」 (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 진료 중심) 활용하는 방안 권장
- 성희롱·성폭력·폭력 및 인권교육(미혼모·부 인식개선 포함), 장애인건강권, 학생제 적정사용 및 내성예방교육,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(신생아 심폐소생술 포함 권고), 자살예방(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), 아동학대예방, 노인학대예방, 안전진료 가이드라인, 환자혈액관리 등 교육과정 마련
- 연간 보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,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“별도 표시”하여 보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,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
-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(「소중한 내 면허, 잘 관리하자」, 보건복지부) 활용하는 방안 권장
-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표준교안(‘21.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배포) 활용하는 방안 권장

(2)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

- **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**(기본소생술, 전문심혈관 소생술, 신생아 심폐소생술 등)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취안전 가이드라인 및 환자안전에 관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(‘15.2월,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)
- **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**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(아동복지법 제26조)
- **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,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고용문화** 조성을 위한 **양성평등 및 인권교육***을 교육

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'16.11월,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, 국가인권위원회)

- **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**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('16.8월,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)
 - 감염관리 관련 학회·단체* 등과 연계하여 근거 기반의 온·오프라인 감염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, 공유
 - * 대한감염학회,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,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, 대한화학요법학회, 대한소아감염학회
 - ** 감염관리 관련 학회·단체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증, 보수교육 인정 권장
 - *** 주요 감염병 별 항생제 적정 사용(적응증, 용량, 기간, 경로 등), 새로운 항생제, 항생제 내성률 경향 등 정보 제공
-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 해소 등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)
- 전국민 대상 게이트키피어 교육으로 빈틈없는 인적발굴망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'18.1월,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)
-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)
-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'19.4월,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)
-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('20.12월, 2021-2025 혈액관리 기본계획 발표)
 - 환자혈액관리, 수혈관리 관련 학회·단체* 등과 연계하여 환자혈액 관리 분야 보수교육 콘텐츠 공유
 - * 대한수혈학회, 환자혈액관리학회
 - ** 환자혈액관리 관련 학회·단체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, 보수교육 인정 권장

(3)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

- 중앙회는 해당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이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

【장기 미종사자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】

- (교육대상) 미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인
- (교육내용)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학습하여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 유휴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(재)편성하고 보수교육으로 인정
 - * (공통내용) 감염관리,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, 의료윤리 등
 - * 가급적 업무 복귀한 당해 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
- (교육비) 시간당 교육비는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1시간당 교육비용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

(4) 보수교육 강의평가제 도입 및 신규강의 개발

- 중앙회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를 의무화하여 일정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교육은 폐지
- 의료기술 발달 및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매년 일정수 이상의 온·오프라인 강의를 신설

마. 보수교육실시기관

- 의료인 보수교육은 중앙회가 실시하여야 하나,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, 대학·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, 수련병원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위탁 실시 가능 (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)

의료법 시행규칙

제20조(보수교육)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(이하 “지부”라 한다)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설치된 의학·치의학·한의학·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
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·한의학전문대학원·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
3. 수련병원
4.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5.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

-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가능(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)
 -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
 - *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매년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,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함
- 지부 또는 전문학회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, 내부 심의를 통해 보수교육 내용, 이수시간 대비 인정 평점, 교육비용 산정 등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
 - 교육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거나 보수교육 사무편람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엄격하게 관리

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(의료인 협회 전체)

가. 보수교육 비용 :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(간접비+직접비)

- 보수교육 직접비는 “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(비)회원 간에 동일* 하게 부과”하되,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(비)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

*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

✓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

- 각 교육별로 강사료, 교재비,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(회원+비회원)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

✓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

-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,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(회원+비회원)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

* 미납(비)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·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,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
(1시간당 간접비 * 8시간 ≤ 협회비)

-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,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

구분	참여율
전담 인력	월 급여 * 100% 이내
보조 인력	월 급여 * 30% 이내
기획, 회계 담당 등	월 급여 * 20% 이내

-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
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
-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, 간접비는 100% 환불

✔ **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**

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

-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
-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
-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

나. 회계처리

- 보수교육 관련 예산(수입, 지출)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
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
-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“잉여금”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
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
- 보수교육 관련 예산(수입, 지출)은 별도의 계좌*로 사용

* 기관 명의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며,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
보통예금 등의 계좌

다. 기타 수수료 관련

-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
및 부과 금지

4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

가.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(의료인 전체)

- (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)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.개별 기준 가목의 21, 다목의 12
 - 1차 위반 : 경고
 - 2차 위반(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) : 자격정지 7일

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(의료인 협회 전체)

가.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

(1) 보수교육 계획

- 중앙회장(협회의 장)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, 교육과목 및 내용, 교육방법(집합·사이버 등),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(별지 제11호)를 작성·제출 (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)
-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

(2) 보수교육 실적 보고

- 중앙회장(협회의 장)은 매년 4월 말일까지 보수교육 이수자 수,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(별지 제12호)를 작성·제출 (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)
- 소속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「면허신고시스템」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

나.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

- 중앙회장(협회의 장)은 해당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증, 면제·유예 확인서 발급
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 및 제21조제2항)
 -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, 「면허신고시스템」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·유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설계 (※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)

 -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
 - 신고 수리 시 중앙회장(협회의 장)은 해당 의료인의 최근 신고년도*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
- *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, 2011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

다.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

-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(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)

【관계서류】

1. 보수교육 대상자명단(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명시)
2. 보수교육 면제자명단
3.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라. 「사무편람」을 작성하고,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것

(1) 관련 법령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2) 기재사항

【필수 기재사항】

1.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
2.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기준·절차
 - * 실시기관 자격요건, 심사기준, 제출서류(관련 서식 포함), 인증 절차 등 명시
3. 보수교육 프로그램 인정 기준·절차
 - * 심사기준*, 제출서류(관련 서식 포함), 인정 절차 등 명시
 - ** 보수교육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, 인정신청 시간의 적절성,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출여부는 심사항목에 필히 포함되어야 함
4.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운영·관리 기준
 - *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실시기관이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 명시
5. 보수교육비(직접비, 간접비) 산출기준

【권장 기재사항】

1. 온라인 교육 관련 사항
2.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관련 Q&A

마.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

- (출결관리 강화) 신분증 본인대조 확인, 서명기입 의무화하고,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
- (협회 내 평가 강화) 협회 내 '보수교육평가단'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, 운영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

✓ “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” 운영방안 안내

- (구 성)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 협의체 구성*('16.9월)
 - * 의료인 단체(각 협회별 2명), 보건복지부(의료인력정책과장)로 협의체 구성
- (역 할) 각 협회별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현황, 보수교육 운영현황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등
- (운 영)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(4월, 11월)

바. 각종 협회 규정 개정

- 각종 협회 규정(정관시행 세칙, 보수교육규정, 윤리위원회규정 등)이 개정된 의료법령 등(업무지침 포함)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

사. 기타 협조 요청 사항

-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·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중앙회는 지회·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할 것
- 보수교육비용(직접비)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할 것
- 어떠한 경우(협회비 미납 포함)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

✓ 주요 부당 운영 사례

- 온·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,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
-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
- 중앙회·지부 필수과목 지정
-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
-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
-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

■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

(단, 의료인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시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하에 시행 가능)

○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·운영

- 회원·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,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, 출결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

⇒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 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

○ 문의사항 안내 관련

- 소속 보건의료인의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
-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「보건복지부 콜센터」(129)를 우선 안내함

*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

제III부

참고 서식

1 주요 서식 (의료인)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기본 인적사항	성명	면허번호
	직종 [] 의사 [] 치과의사 [] 한의사 [] 조산사 [] 간호사	
	면허발급 연월일	E-mail
	주소	
	연락처 일반전화	휴대전화

취업상황	활동 여부 ([] 전속, [] 비전속) 의료기관 근무 [] 비의료기관 근무 [] 미활동
	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[] 종합병원 [] 병원 [] 요양병원 [] 의원 [] 치과병원 [] 치과의원 [] 조산원 [] 보건의료원 [] 보건소 [] 보건지소 [] 한방병원 [] 한의원
	근무 의료기관 명칭
	근무 의료기관 주소
	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[] 연구소 [] 기업체 [] (준)정부기관 [] 학교 [] 자영업 [] 기타()
근무지 주소	

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	최근 신고 연도
	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()시간 이수 의무 중 ()시간 이수

「의료법」 제2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보수교육 이수증(이수자만 첨부합니다) 2.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(해당자만 첨부합니다)
------	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- 가.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「의료법」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: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교부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 - 나.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: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2.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,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3. “전속”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4.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“의료기관 근무자”란만,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“비의료기관 근무자”란만 작성합니다.
5. “근무 의료기관 명칭”란 및 “근무 의료기관 주소”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,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.
6.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7.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보수교육(의무이수 시간: 연간 8시간)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보수교육 [] 면제 [] 유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자	성명	면허번호
	직종 [] 의사 [] 치과의사 [] 한의사 [] 조산사 [] 간호사	

신청사유	면제·유예 신청 대상 연도
	구체적 면제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) [] 1. 전공의 [] 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외과대학·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[] 3.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[] 4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	구체적 유예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7항) [] 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[] 2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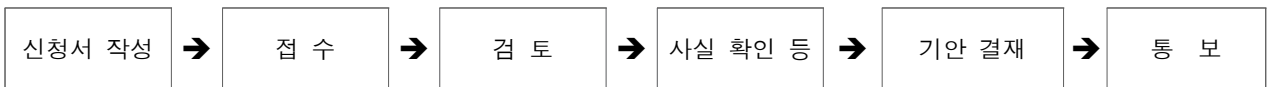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회장 귀하

첨부서류	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

보수교육 [] 면제 [] 유예 확인서

성 명 :

면허번호:

직 종 :

보수교육 면제·유예 내역: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
·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중 앙 회 장

직인

문서번호

(전화번호)

시행일자

수신

발신

(인)

제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

중앙회(단체)명							대표자 성명	
소재지							전화번호	
보수교육 실시기관명	교육예정 인원	교육과목	교육예정 시간	교육예정 일자	소요 예산	피교육자 경비부담액		

210mm×297mm

신문용지(2급) 54g/m²

문서번호

(전화번호)

시행일자

수신

발신

(인)

제목

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

중앙회(단체)명		대표자 성명		
소재지		전화번호		
면허자 수	보수교육 대상자 수	보수교육 이수자 수	보수교육 면제자 수	보수교육 미이수자 수
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				
1. 변경 내용				
당초		변경		
2. 변경 사유				

210mm×297mm

신문용지(2급) 54g/m²

보수교육이수증

성 명 :

면허번호:

직 종 :

보수교육 이수내역:

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,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.

 년 월 일

중 앙 회 장

직인

면허신고 확인증

성 명 :

면허번호:

직 종 :

귀하는 「의료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인
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년도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다음 신고연도는 년입니다.

년 월 일

중 앙 회 장

직인